제2982호
2023. 2. 28.

발 행 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편 집 인 : 홍 보 담 담 관 주 재 봉
전화 :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람	기관의장

구 보

◉ 자치법규
[규 칙]
제766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 2
[훈 령]
제182호 : 서울특별시 중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 10
[입법예고]
제2023-190호 :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6

◉ 공 고
제2023-185호 : 2023년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 42
제2023-189호 : 공인(청인) 신조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 66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서울특별시중구

자 치 법 규

[규 칙]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66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 관련)

직렬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1,303	894	31	120	258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1,295	890	27	120	258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6	5		1	
서기관	3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5급 소계	63	34	1	13	15
행정	40	25	1		14
시설(토목1,건축1,지적1)	3	3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4	4			
행정.보건.간호	1			1	
의무·약무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의무	8			8	
6급 소계	261	184	4	24	49
행정	164	108	4	9	43
세무	17	17			
사회복지	11	8			3
전산	1	1			
방호	1	1			
공업(기계2,전기2,화공1)	5	5			
보건	1			1	
녹지	4	4			
의료기술	1			1	
약무	2			2	
간호	6			6	
환경	2	2			
시설(토목8,건축6,지적4,디자인1,도시계획2)	21	21			
시설(토목·건축)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보건	3	1		2	
행정·시설(행정4,토목1,건축1)	6	6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보건진료	2			2	
운전	5	5			

직렬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7급 소계	407	294	15	42	56
행정	228	161	11	11	45
세무	26	26			
사회복지	22	10		1	11
전산	3	3			
속기	3		3		
방호	6	6			
공업(기계5,전기6,화공4)	15	14	1		
녹지	3	3			
수의	1	1			
보건	9	3		6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5			5	
환경	2	2			
약무	1			1	
약무·간호	1			1	
간호	16			16	
시설(토목18,건축15,지적6, 디자인1, 도시계획2, 교통시설2)	44	44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위생	3	3			
시설관리	4	4			
운전	10	10			
전기운영(전기)	1	1			
8급 소계	362	269	2	28	63
행정	198	152	2	5	39
세무	25	25			
사회복지	36	12			24
전산	6	6			
방호	2	2			
공업(기계4,전기5,화공1)	10	10			
녹지	5	5			
보건	4			4	
의료기술	5			5	
간호	14			14	
환경	1	1			
시설(토목18,건축10,지적7,교통시설1)	36	36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3	3			
시설관리	2	2			
운전	10	10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					
사무운영(워드1)	1	1			

직렬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9급 소계	193	101	5	12	75
행정	54	22	2	2	28
세무	14	14			
사회복지	34	10			24
전산	1			1	
방호	6	5	1		
공업(기계4,전기9)	13	13			
녹지	3	3			
보건	2			2	
의료기술	2			2	
환경	1	1			
식품위생	1			1	
시설(토목6,건축3,지적3)	12	12			
방송통신	1	1			
시설관리(일반1, 기계4, 전기1)	6	6			
위생	4	4			
운전	29	9	2	3	15
전기운영(전기)	1	1			
사무운영(워드)	9			1	8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비상대비 · 민방위 요원)	1	1			
다군(비상대비 · 민방위 요원)	1	1			
별정직 계	7	3	4		
5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1	1			
전문위원	2		2		
6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7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3	1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 · 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관련)

직렬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1,303	847	31	119	306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1,295	843	27	119	306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6	5		1	
서기관	3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보건 · 의무)	1			1	
5급 소계	63	34	1	13	15
행정	40	25	1		14
시설(토목1,건축1,지적1)	3	3			
행정 · 사회복지	2	1			1
행정 · 녹지	1	1			
행정 · 보건	2			2	
행정 · 시설	4	4			
행정.보건.간호	1			1	
의무 · 약무	1			1	
보건 · 의료기술 · 의무 · 간호	1			1	
의무	8			8	
6급 소계	261	182	4	24	51
행정	164	107	4	9	44
세무	17	17			
사회복지	11	7			4
전산	1	1			
방호	1	1			
공업(기계2,전기2,화공1)	5	5			
보건	1			1	
녹지	4	4			
의료기술	1			1	
약무	2			2	
간호	6			6	
환경	2	2			
시설(토목8,건축6,지적4,디자인1,도시계획2)	21	21			
시설(토목 · 건축)	1	1			
행정 · 세무	1	1			
행정 · 사회복지	3				3
행정 · 방송통신	1	1			
행정 · 전산 · 방송통신	1	1			
행정 · 보건	3	1		2	
행정 · 시설(행정4,토목1,건축1)	6	6			
보건 · 의료기술	1			1	
공업(화공) · 보건 · 환경	1	1			
보건진료	2			2	
운전	5	5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 · 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관련)

직렬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1,303	894	31	120	258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1,295	890	27	120	258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6	5		1	
서기관	3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보건 · 의무)	1			1	
5급 소계	63	34	1	13	15
행정	40	25	1		14
시설(토목1,건축1,지적1)	3	3			
행정 · 사회복지	2	1			1
행정 · 녹지	1	1			
행정 · 보건	2			2	
행정 · 시설	4	4			
행정.보건.간호	1			1	
의무 · 약무	1			1	
보건 · 의료기술 · 의무 · 간호	1			1	
의무	8			8	
6급 소계	261	184	4	24	49
행정	164	108	4	9	43
세무	17	17			
사회복지	11	8			3
전산	1	1			
방호	1	1			
공업(기계2,전기2,화공1)	5	5			
보건	1			1	
녹지	4	4			
의료기술	1			1	
약무	2			2	
간호	6			6	
환경	2	2			
시설(토목8,건축6,지적4,디자인1,도시계획2)	21	21			
시설(토목 · 건축)	1	1			
행정 · 세무	1	1			
행정 · 사회복지	3				3
행정 · 방송통신	1	1			
행정 · 전산 · 방송통신	1	1			
행정 · 보건	3	1		2	
행정 · 시설(행정4,토목1,건축1)	6	6			
보건 · 의료기술	1			1	
공업(화공) · 보건 · 환경	1	1			
보건진료	2			2	
운전	5	5			

현 행

직렬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7급 소계	406	278	15	41	72
행정	227	145	11	10	61
세무	26	26			
사회복지	22	10		1	11
전산	3	3			
속기	3		3		
방호	6	6			
공업(기계5, 전기6, 화공4)	15	14	1		
녹지	3	3			
수의	1	1			
보건	9	3		6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5			5	
환경	2	2			
약무	2			2	
<신 설>					
간호	16			16	
시설(토목18, 건축15, 지적6, 디자인1, 도시계획2, 교통시설2)	44	44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위생	3	3			
시설관리	4	4			
운전	10	10			
전기운영(전기)	1	1			
8급 소계	363	245	2	28	88
행정	199	129	2	5	63
세무	25	25			
사회복지	36	11			25
전산	6	6			
방호	2	2			
공업(기계4, 전기5, 화공1)	10	10			
녹지	5	5			
보건	4			4	
의료기술	5			5	
간호	14			14	
환경	1	1			
시설(토목18, 건축10, 지적7, 교통시설1)	36	36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3	3			
시설관리	2	2			
운전	10	10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					
사무운영(워드1)	1	1			

개 정 안

직렬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7급 소계	407	294	15	42	56
행정	228	161	11	11	45
세무	26	26			
사회복지	22	10		1	11
전산	3	3			
속기	3		3		
방호	6	6			
공업(기계5, 전기6, 화공4)	15	14	1		
녹지	3	3			
수의	1	1			
보건	9	3		6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5			5	
환경	2	2			
약무	1			1	
약무 · 간호	1			1	
간호	16			16	
시설(토목18, 건축15, 지적6, 디자인1, 도시계획2, 교통시설2)	44	44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위생	3	3			
시설관리	4	4			
운전	10	10			
전기운영(전기)	1	1			
8급 소계	362	269	2	28	63
행정	198	152	2	5	39
세무	25	25			
사회복지	36	12			24
전산	6	6			
방호	2	2			
공업(기계4, 전기5, 화공1)	10	10			
녹지	5	5			
보건	4			4	
의료기술	5			5	
간호	14			14	
환경	1	1			
시설(토목18, 건축10, 지적7, 교통시설1)	36	36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3	3			
시설관리	2	2			
운전	10	10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					
사무운영(워드1)	1	1			

현 행

직렬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9급 소계	193	96	5	12	80
행정	54	23	2	2	27
세무	14	14			
사회복지	34	5			29
전산	1			1	
방호	6	5	1		
공업(기계5, 전기9)	14	14			
녹지	3	3			
보건	2			2	
의료기술	2			2	
환경	1	1			
식품위생	1			1	
시설(토목6, 건축3, 지적3)	12	12			
방송통신	1	1			
시설관리	1	1			
위생	4	4			
운전	29	9	2	3	15
전기운영(전기)	2	2			
기계운영(기계)	3	2			1
사무운영(워드)	9			1	8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비상대비 · 민방위 요원)	1	1			
다군(비상대비 · 민방위 요원)	1	1			
별정직 계	7	3	4		
5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1	1			
전문위원	2		2		
6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7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3	1	2		

개 정 안

직렬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9급 소계	193	101	5	12	75
행정	54	22	2	2	28
세무	14	14			
사회복지	34	10			24
전산	1			1	
방호	6	5	1		
공업(기계4, 전기9)	13	13			
녹지	3	3			
보건	2			2	
의료기술	2			2	
환경	1	1			
식품위생	1			1	
시설(토목6, 건축3, 지적3)	12	12			
방송통신	1	1			
시설관리(일반1, 기계4, 전기1)	6	6			
위생	4	4			
운전	29	9	2	3	15
전기운영(전기)	1	1			
<삭 제>					
사무운영(워드)	9			1	8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비상대비 · 민방위 요원)	1	1			
다군(비상대비 · 민방위 요원)	1	1			
별정직 계	7	3	4		
5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1	1			
전문위원	2		2		
6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7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3	1	2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관리기관별 정원 변동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직개편 및 업무 재조정에 따른 관리기관별 정원 개정

○ 시설관리직렬 직무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계·전기시설 정원 확보

○ 일반임기제공무원(사진) 직급 조정

○ 보건소 복수직렬(약무·간호) 신설 및 정원 조정

[훈 령]

서울특별시 중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3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훈령 제182호

서울특별시 중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서울특별시 중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구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처리부서) ①「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처리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외부위원은 구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내부위원은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5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 결과 등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에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같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수당)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안 건	
일 시	년 월 일
검 토 의 견	

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안 건	
일 시	년 월 일
심 의 결 과	

< 서울특별시 중구 청원심의회 위원 >

구 분	성 명	심의 의견			서 명
		찬성 (심의결과 동의)	반대 (심의결과 반대)	비 고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청원제목		
청 원 인	성 명	
	주 소	
청원요지		
검토의견	*청원사항 검토내용 및 개최 이유 등 기술*	

「서울특별시 중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6조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처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 청원심의회 귀중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190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관리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로당 운영 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경로당의 시설 기준 규정 신설(제3조)

- 이용정원 20명 이상 및 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경로당 운영시간 현실화(제9조)

-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물품 및 개·보수 대상 규정 기준 정립(제11조)

- 경로당 물품지원 및 경로당 시설 개·보수는 구립 시설 대상이 원칙, 사립시설은 물품에 한해 지원할 수 있음

○ 경로당 내의 금지사항 구체화(제13조)
- 숙박, 사행성 오락, 도박행위, 음주, 고성방가 행위 등
○ 회원의 구분 및 정의 규정 신설(제14조)
- 정회원 및 특별회원 구분, 정의
○ 공개 조건 사항 세분화 및 구체화(제15조)
- 총회 및 이사회 개최 시, 회원 5인 이상 요구 시 등
○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규정 신설(제17조)
- 행정기관의 자료요구 기한 내 응하고, 보고 등을 원활히 하도록 함
○ 경로당에 대한 외부간섭 배제 규정 신설(제18조)
- 경로당 미가입 등 정당한 권한 없는 사람은 경로당 운영에 간섭하여서는 안됨 등
○ 수입금 관리, 지출, 정산 규정 구체화 및 신설(제20조, 제21조)
- 보조금 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구분,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등
○ 운영평가 및 상벌규정 세분화 및 구체화(제22조, 23조)
- 연1회 경로당 운영평가 실시, 운영비 중단 조치 기준 마련

3. 의견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우 편)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어르신시설팀
- (이메일) kimilhyun123@seoul.go.kr
- (팩 스) 02-3396-8733

※ 문의 : 중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김일현 ☎02-3396-5524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관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관리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 경로당의 회원은 만 65세 이상의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경로당 관할 동에 거주하는 남·녀 노인으로 한다

제3조(시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이용정원 20명 이상
2. 화장실,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시설
3. 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

제4조(적용) 본 규정의 적용은 구립경로당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임원

제5조(임원의 구성 및 자격) ①경로당에는 회장 1명과 몇 명의 부회장 (여성 부회장 1명 포함), 이사, 감사를 둘 수 있다.

②임원은 65세 이상으로 지역사회에서 덕망있는 건강한 사람으로서 경로당 관할 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회장은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임원이 재임 중 다른 구·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임원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한다.

제6조(임원 등의 선출 및 등록)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②선출된 회장 및 임원에 대해서는 총회 회의록, 이력서, 명함판사진 각 1매를 첨부하여 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회장 및 부회장 4년,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하고 회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②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원 등의 임무) ①회장은 경로당을 대표하며 경로당 운영의 전체적 책임을 진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토의한다.

④감사는 경로당 운영사항에 대한 감사를 한다.

⑤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경로당 운영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3장 운영 및 관리

제9조(이용시간) 경로당의 이용시간은 평일(월～금)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경로당 특성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승인 하에 조정이 가능토록 한다.

제10조(운영재원) 경로당운영은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회원들의 회비 등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11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구립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사립 시설 중 구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운영비, 전기료, 난방비 등이며, 구청장이 경로당에 지급한다.

③ 경로당 운영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경로당에 지급한다.

④ 구가 시행하는 경로당 물품지원 및 경로당 시설의 개·보수 공사는 구립 시설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품에 한해 사립 시설에도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장부의 비치관리) 경로당 회장은 아래의 장부를 비치·정리해두어야 한다.

1. 시설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소유증명서
3. 시설운영(교육일지)
4. 이용노인회원명부
5. 수입·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
6.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7.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관련 문서철

제13조(금지사항) 경로당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숙박

2. 영업, 사행성 오락 또는 도박행위
3. 음주, 고성방가행위
4. 개인 재산 및 물품의 보관
5. 그 밖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나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14조(회원관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상 거주 주소지와 가장 근접한 경로당(행정동 등 최소 행정 단위 기준)에 가입신청하여 월 회비 등을 납부하는 사람

2. 특별회원은 거주지 및 연령에 관계없이 경로당 활동에 참여하고 경로당 운영에 도움을 주는 사람 중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사람

제15조(운영의 공개) 회장은 경로당 운영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을 다음 각호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총회 및 이사회 개최 시 회의록 등을 작성·비치하여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회원 5인 이상이 경로당 운영에 관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수입·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는 매분기 말에 모든 회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활성화) 구에서는 다음 사항을 적극 시행하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도록 노력한다.

1. 노인관련프로그램의 개발 · 보급 및 적극참여유도
2.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효 사상 고취
3. 지역봉사지도원의 적극적 참여
4. 노인공동작업장 확대 실시
5. 경로당 후원회 등의 구성을 통한 지역주민의 인식 제고
6. 1개 경로당 1개 사업 갖기 추진

제17조(행정업무수행) 회장은 행정기관의 자료 요구에 대해 기한 내에 응하고, 행정기관의 자료요구 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외부간섭 배제) 경로당 미가입자 등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은 경로당 운영에 대해 간섭하여서는 아니되며, 자발적으로 경로당에 도움을 제공한 것에 대해 기득권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9조(관리책임) ①구청장은 경로당 시설의 안전 관리를 유지하고 연 1회 이상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의뢰·실시해 이용 노인들의 안전 및 편익을 증진한다.

②경로당의 회장은 회원 상호간 협력을 통하여 경로당 시설을 항상 깨끗이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경로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제4장 수입금 집행 및 정산

제20조(수입금 구분 및 관리) ① 수입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금 수입과 자체 수입으로 구분한다.

1. 보조금 수입(경로당 운영보조금 등)
2. 자체 수입(회비 수입, 후원금 수입 등)

② 보조금 수입과 자체 수입은 반드시 구분하여 관리하며, 별도의 통장을 각각 개설하여야 한다.

제21조(지출 및 정산) ① 보조금 수입의 투명한 지출관리를 위해 회장은 보조금 수입관리 계좌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지출 시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한다.

②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해야 하며, 증빙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정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한다.

1. 정산의 의의 : 월, 분기, 연 등 일정한 기간의 수입과 지출을 기재하고 해당기간의 말기시점에 남은 금액을 확인하는 작업
2. 회장은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을 그 밖의 수입금과는 별도로 보조금 금전출납부(별지 제3호서식)에 정리하며 지출사항은 정산서양식(별지 제1호서식)에 지출결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구청에 제출한다.
3. 경로당 보조금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각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남은 보조금 금액은 이자수입과 함께 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평가 및 상벌

제22조(운영평가) ① 구청장은 연 1회 경로당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운영평가 결과 우수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인의 날 행사 등에서 모범경로당으로 지정하여 표창·격려할 수 있다.

제23조(상벌규정) ① 경로당 운영규정을 위반할 경우나 경로당의 내분으로 인하여 경로당 이용노인들에게 불안감이 조성되는 경우 구청장은 경로당회장과 임원들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속해서 위반시에는 운영비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운영비 지원 중단 등의 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운영비 지원 중단 결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운영보조금 감액 및 지원중지 기준

연번	위 반 사 항	처 리 내 용	비고
1	보조금의 사용범위 외 사용 시	사용금액 차감	
2	보조금의 현금사용 기준 초과 사용 시	초과 사용금액 차감	
3	경로당 회원가입을 특별한 이유없이 제한하거나 신규 회원을 배척하여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	운영비 1/3 감액	
4	운영보조금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사항 불이행 시	운영비 1/2 감액	
5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내·외부적으로 분란이 발생하여 1개월 동안 지속되는 경우	운영비 1/4 감액	
6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내·외부적으로 분란이 발생하여 2~4개월 동안 지속되는 경우	운영비 1/3 감액	
7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내·외부적으로 분란이 발생하여 5~7개월 동안 지속되는 경우	운영비 1/2 감액	
8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내·외부적으로 분란이 발생하여 8개월 넘게 지속되는 경우	운영비 미지급 (분란 해소 시까지)	

[별지 제1호서식]

경로당 운영보조금 정산서

□ 경로당명 : [전화번호]

□ 정산내역

구 분	이 월 액 (가)	수 령 액 (나)	지 출 액 (다)	잔 액 (라)	비 고
계					
월					
월					
월					

※ "3월 잔액 = 4월 이월액" 으로 작성
※ (가 + 나 - 다) = 라

경로당 운영보조금을 위와 같이 정산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 경로당 회장 [인]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지 출 결 의 서

	사용자	총 무	부 회 장	회 장
지출일자				

지 출 액

지출내용

[지출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수입 금전 출납부

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 **첨부 : 통장 사본(거래내역 부분)**

[별지 제4호서식]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로당	명 칭			시설의 종류	경 로 당
	소재지				
	대표(회장)			주민등록번호	
	이용정원	명		사업개시예정일	
	예 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와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대표자(회장의 주민등록 등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립의 경우 소유증명서, 임대계약서, 또는 사용승락서 (구립은 제외)

[별지 제5호서식]

비 품 (시 설)대 장

물품명	제품명	용량	수량	구입일시	구입처	구입자	A/S 연락

[별지 제6호서식]

경로당 회원 명단

경로당명	회원명	주 소	생년월일	회 원 가입일	연락처	비고

[별지 제7호서식]

경로당 시설연혁에 관한 기록부

경로당 명	최초설립일	경로당 개원에 관한 기재사항	비 고

[별지 제8호서식]

경로당 시설운영(교육일지)

경로당명	교육 및 행사일시	행사(교육) 내용	비고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생 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회원) (생 략)	제2조(회원)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시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이용정원 20명 이상 2. 화장실,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시설 3. 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
제3조(적용) 본 규정의 적용은 구립경로당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현행 제3조와 같음)
제4조(임원의 구성 및 자격) ①경로당에는 회장 1명과 몇 명의 부회장(여성 부회장 1명 포함), 이사, 감사를 둘 수 있다. ②임원은 65세 이상으로 지역사회에서 덕망있는 건강한 사람으로서 경로당 관할 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회장은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임원이 재임 중 다른 구·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임원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한다.	제5조(현행 제4조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원 등의 선출 및 등록)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②선출된 회장 및 임원에 대해서는 총회 회의록, 이력서, 명함판사진 각 1매를 첨부하여 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회장 및 부회장 4년,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하고 회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②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임원 등의 임무) ①회장은 경로당을 대표하며 경로당 운영의 전체적 책임을 진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토의한다. ④감사는 경로당 운영사항에 대한 감사를 한다. ⑤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경로당 운영의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현행 제7조와 같음)
제3장 운 영	제3장 운영 및 관리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이용시간) 경로당의 이용시간은 아침9시부터 저녁7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경로당 특성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승인하에 조정이 가능토록 한다.	제9조(이용시간)---------- 평일(월~금)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
제9조(운영재원등)① 경로당운영은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회원들의 회비 등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②회장은 구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을 그 밖의 수입금과는 별도로 보조금 금전출납부에 정리하며 지출사항은 정산서양식(별지 1호서식)에 지출결의서 (별지 2호서식)를 첨부하여 구청에 제출한다.	제10조(운영재원) 경로당 운영---------- ----------수입으로 한다. ②<삭 제>
제10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생 략) ②(생 략) ③(생 략) ④<신 설>	제11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 구가 시행하는 경로당 물품지원 및 경로당 시설의 개·보수 공사는 구립 시설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품에 한해 사립 시설에도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장부의 비치관리) 경로당 회장은 아래의 장부를 비치·정리해두어야 한다. 가. 시설연혁에 관한 기록부	제12조(장부의 비치관리)----------. 1. 시설연혁에 관한 기록부

현 행	개 정 안
나. 재산목록과 소유증명서 다. 시설운영(교육일지) 라. 이용노인회원명부 마. 수입·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 바.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사.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관련 문서철	2. 재산목록과 소유증명서 3. 시설운영(교육일지) 4. 이용노인회원명부 5. 수입·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 6.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7. 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관련 문서철
제15조(금지사항) ① 경로당 시설물내에서 는 야간 숙박을 할 수 없다. ②경로당내에서는 사행성 유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5.<신 설>	제13조(금지사항) 경로당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숙박 2. 영업, 사행성 오락 또는 도박행위 3. 음주, 고성방가행위 4. 개인 재산 및 물품의 보관 5. 그 밖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나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신 설>	제14조(회원관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상 거주 주소지와 가장 근접한 경로당(행정동 등 최소 행정 단위 기준)에 가입신청하여 월 회비 등을 납부하는 사람 2. 특별회원 : 거주지 및 연령에 관계없이 경로당 활동에 참여하고 경로당 운영에 도움을 주는 사람 중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사람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운영의 공개) 회장은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경로당 운영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1.~3.<신 설>	제15조(운영의 공개) 회장은 경로당 운영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을 다음 각호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총회 및 이사회 개최 시 회의록 등을 작성·비치하여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회원 5인 이상이 경로당 운영에 관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수입·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는 매분기 말에 모든 회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활성화) 구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적극 시행함으로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 하는데 노력한다. 가. 노인관련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적극참여유도 나.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효 사상 고취 다. 지역봉사지도원의 적극적 참여 라. 노인공동작업장 확대 실시 마. 경로당 후원회 등을 구성하여 지역주민 제고 바. 1개 경로당 1개 사업 갖기 추진	제16조(운영활성화) 구에서는 다음 사항 을 적극 시행하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노력한다. 1. 노인관련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적극참여유도 2.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효 사상 고취 3. 지역봉사지도원의 적극적 참여 4. 노인공동작업장 확대 실시 5. 경로당 후원회 등의 구성을 통한 지역주민의 인식 제고 6. 1개 경로당 1개 사업 갖기 추진
<신 설>	제17조(행정업무수행) 회장은 행정기관의 자료 요구에 대해 기한 내에 응하고, 행정기관의 자료 요구 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8조(외부간섭 배제) 경로당 미가입자 등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은 경로당 운영에 대해 간섭하여서는 아니되며, 자발적으로 경로당에 도움을 제공한 것에 대해 기득권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관리책임) ①구청장은 경로당 시설의 안전 관리를 유지하고 연 1회 이상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의뢰·실시해 이용 노인들의 안전 및 편익을 증진한다. ②경로당의 회장은 회원 상호간 협력을 통하여 경로당 시설을 항상 깨끗이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경로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제19조(현행 제14조와 같음)
제4장 관 리	제4장 수입금 집행 및 정산
<신 설>	제20조(수입금 구분 및 관리) ①수입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금 수입과 자체 수입으로 구분한다. 1. 보조금 수입(경로당 운영보조금 등) 2. 자체 수입(회비 수입, 후원금 수입 등) ②보조금 수입과 자체 수입은 반드시

현 행	개 정 안
	구분하여 관리하며, 별도의 통장을 각각 개설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지출 및 정산) ①보조금 수입의 투명한 지출관리를 위해 회장은 보조금 수입 관리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지출 시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 한다. ②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해야 하며, 증빙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정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한다. 1. 정산의 의의 : 월, 분기, 연 등 일정한 기간의 수입과 지출을 기재하고 해당기간의 말기시점에 남은 금액을 확인하는 작업 2. 회장은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을 그 밖의 수입금과는 별도로 보조금 금전출납부(별지 제3호서식)에 정리하며 지출사항은 정산서양식(별지 제1호서식)에 지출결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구청에 제출한다. 3. 경로당 보조금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각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남은 보조금 금액은 이자수입과 함께 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5장 부 칙	제5장 운영평가 및 상벌
제16조(상벌규정) ①경로당 운영을 잘	제22조(운영평가) ①구청장은 연 1회

현 행	개 정 안
해오는 곳에 대해서는 매년 모범경로당으로 지정하여 표창·격려할 수 있다. ② 경로당 운영규정을 위반할 경우나 경로당의 내분으로 인하여 경로당 이용노인들에게 불안감이 조성되는 경우 구청장은 경로당회장과 임원들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속해서 위반시 에는 운영비 지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로당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운영평가 결과 우수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노인의 날 행사 등에서 모범경로당으로 지정하여 표창·격려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상벌규정) ① 경로당 운영규정을 위반할 경우나 경로당의 내분으로 인하여 경로당 이용노인들에게 불안감이 조성되는 경우 구청장은 경로당회장과 임원들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속해서 위반시에는 운영비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운영비 지원 중단 등의 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운영비 지원 중단 결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1] 운영보조금 감액 및 지원중지 기준

연번	위 반 사 항	처 리 내 용	비고
1	보조금의 사용범위 외 사용 시	사용금액 차감	
2	보조금의 현금사용 기준 초과 사용 시	초과 사용금액 차감	
3	경로당 회원가입을 특별한 이유없이 제한하거나 신규 회원을 배척하여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	운영비 1/3 감액	
4	운영보조금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사항 불이행 시	운영비 1/2 감액	
5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내·외부적으로 분란이 발생하여 1개월 동안 지속되는 경우	운영비 1/4 감액	
6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내·외부적으로 분란이 발생하여 2~4개월 동안 지속되는 경우	운영비 1/3 감액	
7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내·외부적으로 분란이 발생하여 5~7개월 동안 지속되는 경우	운영비 1/2 감액	
8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내·외부적으로 분란이 발생하여 8개월 넘게 지속되는 경우	운영비 미지급 [분란 해소 시까지]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년 월 경로당 운영보조금 정산서

□ 경로당명 : 경로당 ☎

□ 정산내역

구 분	이월액 (가)	수령액 (나)	지출액 (다)	잔 액 (라)	비 고
계					
운영비					
난방비					

※ (가) + (나) - (다) = (라)

년 월분 구청 지원 경로당 운영보조금을 위와 같이 정산보고 함.

년 월 일

경로당 회장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지 출 결 의 서

총 무	부회장	회 장

지출일자 :

지 출 액 :

지출내용 :

(지출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 수입
기 타 수입

금전 출납부

연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경로당 운영보조금 정산서

□ 경로당명 : [전화번호]

□ 정산내역

구 분	이월액 (가)	수령액 (나)	지출액 (다)	잔 액 (라)	비 고
계					
월					
월					
월					

※ "3월 잔액 = 4월 이월액" 으로 작성
※ (가 + 나 - 다) = 라

경로당 운영보조금을 위와 같이 정산보고 합니다.

20 년 월 일

○○ 경로당 회장 (인)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지 출 결 의 서

사용자	총 무	부회장	회 장

지출일자

지 출 액

지출내용

[지출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 수입 금전 출납부

월일	적 요	수 입	지 출	잔 액

○ 첨부 : 통장 사본(거래내역 부분)

현 행

[별지 제4호서식]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경로당	명 칭		시설의 종류	경 로 당
	소재지			
	대표(회장)		주민등록번호	
	이용정원	명	사업개시예정일	
	예 산	수입액	지출액	비고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대표자(회장)의 주민등록 등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립의 경우 소유증명서, 임대계약서, 또는 사용승락서 (구립은 제외)

[별지 제5호서식]

비 품 (시 설) 대 장

품명	제품명	용량	수량	구입일시	구입처	구입자	A/S 연락

[별지 제6호서식]

경로당 회원 명단

경로당명	회원명	주 소	생년월일	회 원 가입일	연락처	비고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현행과 같음)**

[별지 제5호서식] **(현행과 같음)**

[별지 제6호서식]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7호서식] 경로당 시설연혁에 관한 기록부 경로당 명 / 최초설립일 / 경로당 개원에 관한 기재사항 / 비 고	[별지 제7호서식] 경로당 시설연혁에 관한 기록부 경로당 명 / 최초설립일 / 경로당 개원에 관한 기재사항 / 비 고
[별지 제8호서식] 경로당 시설운영(교육일지) 경로당명 / 교육 및 행사일시 / 행사(교육) 내용 / 비고	[별지 제8호서식] **(현행과 같음)**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185호

2023년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3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우리 구의 '23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6,293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4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동일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0,360억원)보다 493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931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1,879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39억원입니다.

◈ 우리 구의 '23년도 당초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55.83%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2.43%입니다.

◈ 우리 구의 '23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6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동일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높은 편이나, 대외적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세입 증대와 세출예산의 효율화에 더욱 힘써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윤가영(02-3396-4913)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서울특별시 중구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기금포함)	6,293	6,248	46	10,360	10,854	△493
	세출예산(기금포함)	6,293	6,248	46	10,360	10,854	△493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55.83	55.26	0.57	29.50	30.83	△1.33
	재정자주도	62.43	61.04	1.39	48.59	48.20	0.39
	통합재정수지	16	3	14	33	-50	84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3	0	3	4	3	0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24	33	△8	41	40	1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2	2	0	3	3	△0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8	8	0	11	12	△1
	지방의회 관련경비	2	2	0	3	4	△0
	지방보조금	43	43	0	80	91	△11
	사회보장적 수혜금 (현금성 복지비)	1,189	0	1,189	-	-	-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형 지방자치단체 : 서울(25개 자치구)

* 유형평균값은 예산개요 1차 입력값에 따라 산출된 값으로 예산개요 2차 작업 후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자료는 3월중 공시예정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3년도 중구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29,343	525,100	0	50,533	53,710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474,529	557,679	583,935	624,758	629,34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중구는 총 예산규모(기금포함)는 매년 증가추세이나, 2023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감소하여 2022년 대비 약 0.73% 증가함

❖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93,624	100	453,547	100	482,852	100	523,789	100	525,100	100
지 방 세	142,488	36.20	167,760	36.99	189,000	39.14	208,683	39.84	216,237	41.18
세외수입	73,725	18.73	74,682	16.47	77,937	16.14	80,757	15.42	76,916	14.65
지방교부세	5,942	1.51	6,912	1.52	11,843	2.45	16,031	3.06	13,249	2.52
조정교부금 등	18,497	4.70	20,619	4.55	10,628	2.20	14,230	2.72	21,441	4.08
보 조 금	109,372	27.79	119,552	26.36	126,444	26.19	149,687	28.58	153,285	29.19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3,600	11.08	64,021	14.12	67,000	13.88	54,400	10.39	43,972	8.3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3년, 일반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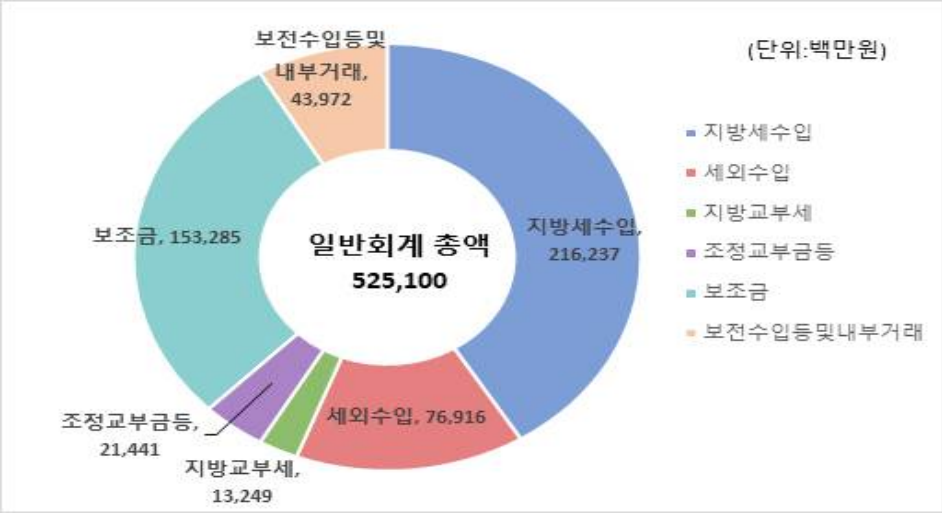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중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3년도 중구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29,343	525,100	0	50,533	53,710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474,529	557,679	583,935	624,758	629,34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중구의 총 예산규모(기금포함)는 매년 증가추세이며, 2022년 대비 약 0.73% 증가함.

❖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93,624	100	453,547	100	482,852	100	523,789	100	525,100	100
일반공공행정	25,192	6.40	37,683	8.31	45,588	9.44	44,185	8.44	34,379	6.55
공공질서 및 안전	2,561	0.65	2,465	0.54	3,104	0.64	4,159	0.79	4,640	0.88
교 육	15,153	3.85	10,302	2.27	10,566	2.19	10,977	2.10	12,359	2.35
문화 및 관광	17,326	4.40	10,794	2.38	20,174	4.18	18,696	3.57	25,028	4.77
환경	28,505	7.24	32,206	7.10	39,085	8.09	38,086	7.27	37,170	7.08
사회복지	151,251	38.43	167,994	37.04	173,852	36.01	200,342	38.25	213,198	40.60
보 건	7,456	1.89	8,757	1.93	10,277	2.13	14,825	2.83	13,049	2.49
농림해양수산	530	0.13	230	0.05	429	0.09	611	0.12	673	0.1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027	0.77	4,006	0.88	6,673	1.38	8,662	1.65	5,669	1.08
교통 및 물류	5,128	1.30	4,980	1.10	4,262	0.88	6,097	1.16	6,769	1.29
국토 및 지역개발	8,377	2.13	12,305	2.71	13,056	2.70	14,840	2.83	9,797	1.87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7,502	1.91	35,406	7.81	27,250	5.64	27,859	5.32	21,558	4.11
기 타	121,616	30.90	126,419	27.87	128,536	26.62	134,450	25.67	140,812	26.82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3년, 일반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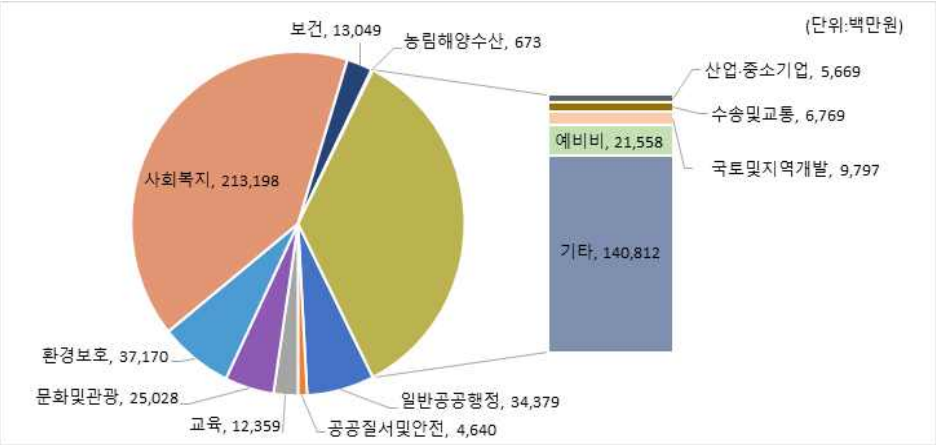

2-3.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중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당초예산 (A)	2023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665,372	672,396	7,024	1.06
중구	624,758	629,343	4,585	0.73
공사·공단	24,619	25,478	859	3.49
출자·출연기관	15,994	17,575	1,580	9.88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중구 시설관리공단 ▸ 출자·출연기관(2개) : 중구문화재단, 중구장학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중구 시설관리공단 (https://www.e-junggu.or.kr/fmcs/1)

○ 설 립 일 : 2007. 8. 6.

○ 조직현황 : 1본부 2실 5부 1단 : 안전감사실,전략기획실,경영지원부,체육사업부, 주차사업부,공공사업부,기술안전부,사회서비스사업단

○ 인력현황 : (정원)308명/(현원)281명/(정원외)543명

○ 주요기능 : 체육문화시설 및 종합행정시설물 관리운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등

□ 중구 문화재단 (https://www.caci.or.kr/caci/main/intro.do)

○ 설 립 일 : 2004. 9. 1.

○ 조직현황 : 1실 2본부 10팀

- 경영지원실(총무인사팀, 예산회계팀, 시설지원팀)
- 예술사업본부(공연사업팀, 대외협력홍보팀, 무대기술팀)
- 문화사업본부(도서관운영팀, 문화사업팀, 문화협력팀, 예술교육팀)

○ 인력현황 : 총 104명(정규직)

○ 주요기능 : 충무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지역문화 활성화, 도서관위탁 운영 등

□ 중구장학재단

○ 설 립 일 : 2012. 2. 10

○ 조직현황 : 비상근이사 9명(당연직이사 포함), 감사 2명(무보수)

○ 주요기능 : 중구 인재발굴 및 양성, 지속적인 학업장려위한 장학사업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 중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55.8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5.83 (64.2)	525,100 (525,100)	293,153 (337,125)	187,976	0	43,972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54.93 (66.01)	53.45 (67.57)	55.28 (69.16)	55.26 (65.64)	55.83 (64.2)

중구-유형평균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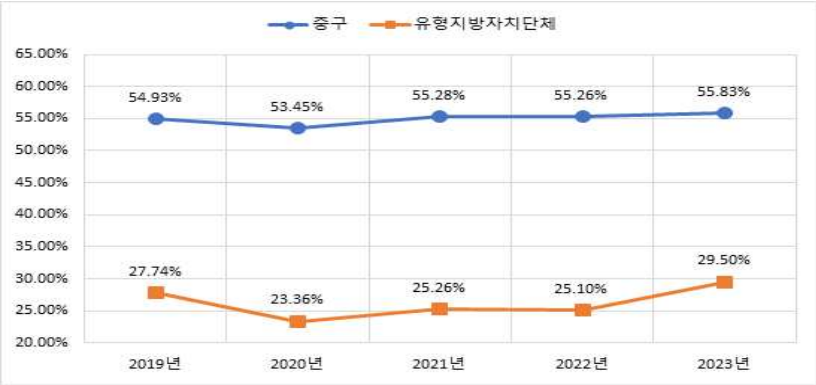

☞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중구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4.95%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등 자체 세입의 비중이 높아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에 비해 약 28.76%이상 높은 편임.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3년도 중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2.4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2.43 (70.81)	525,100 (525,100)	327,843 (371,815)	153,285	0	43,972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61.14 (72.21)	59.52 (73.64)	59.94 (73.81)	61.04 (71.42)	62.43 (70.81)

중구-유형평균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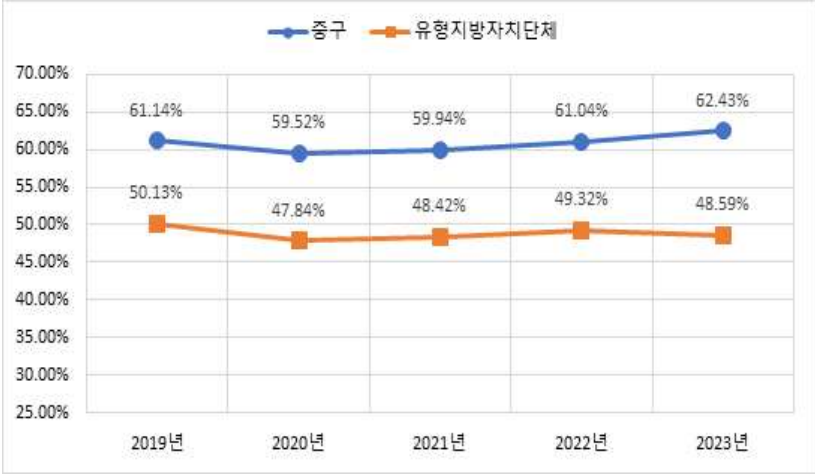

☞ 우리구는 유형 자치단체에 비해 자체세입 비율이 높아 재정자주도가 높은 편임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중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99,987**	**577,020**	**8,253**	**8,545**	**292**	**78,972**	**577,312**	**-77,325**	**1,648**
일반회계	481,128	522,811	0	0	0	43,972	522,811	**-41,683**	**2,290**
기타 특별회계	15,533	50,510	0	0	0	35,000	50,510	**-34,978**	**22**
기 금	3,326	3,699	8,253	8,545	292	0	3,991	**-664**	**-664**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통합재정수지 1	**-75,867**	**-99,372**	**-98,974**	**-88,265**	**-77,325**
통합재정수지 2	**640**	**338**	**2,175**	**289**	**1,648**

☞ 중구의 통합재정수지는 세입의 증가로 통합재정수지가 개선되고, 순세계잉여금 포함 16억 4천만원 흑자임.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중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649,722**	**666,436**	**697,837**	**703,282**	**717,896**	**3,435,174**	**2.50**
자체수입	313,607	322,470	332,095	342,446	353,098	1,663,716	3.00
이 전 수 입	206,749	215,234	235,170	240,134	247,944	1,145,230	4.6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9,366	128,733	130,572	120,703	116,854	626,228	-2.50
세 출	**649,722**	**666,436**	**697,837**	**703,282**	**717,896**	**3,435,174**	**2.50**
경 상 지 출	230,291	234,455	226,929	224,637	223,228	1,139,539	-0.80
사 업 수 요	419,431	431,981	470,908	478,645	494,668	2,295,634	4.2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중구의 202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7**	**17,73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1	6,792
성별영향평가사업	11	9,56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5	1,378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서울특별시 중구 예산현황)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 2023년 중구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2	770	12	770	-	-	-	-

▸ 당초예산 기준

❖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770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로시설과	동대입구역 6번 출구 오르막 계단 조성	3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복지정책과	독거 어르신 및 취약계층 밀키트 제공	2	계속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치수과	빗물받이 자동 덮개 교체사업	20	계속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족정책과	충무어린이집 차양막 설치	0.2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보건지소과	흡연구역 지정 및 흡연부스 설치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육정책과	초등 저학년을 위한 놀이공간 조성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스마트알림이 설치	1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자치행정과	취미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다양화	10	계속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로시설과	노후 이면도로 정비	48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교통행정과	신당 현대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 설치	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로시설과	스쿨존 도로 재포장 (청구동주민센터~청구어린이공원 일대)	8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공원녹지과	청구동 마을마당 리모델링 추진	400	신규사업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서울시 중구 주민참여제도)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중구의 2023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9	68	146	152	575,633	573,364	2,269
감사담당관	1	1	2	2	171	183	-12
생활안전담당관	1	3	9	5	4,986	4,286	699
시민친화국	1	14	23	24	85,509	77,756	7,753
생활복지친화국	1	15	26	32	224,258	209,750	14,508
생활도시친화국	1	11	24	20	15,807	19,808	-4,001
경제친화국	1	8	15	14	12,229	14,966	-2,738
행정지원국	1	8	20	32	203,423	207,565	-4,143
보건소	1	6	24	20	24,778	26,808	-2,030
구의회	1	2	3	3	4,473	3,669	804
동주민센터	0	0	0	0	0	8,573	-8,573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2023 예산의 성과계획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55.83	62.43	40.60	31.63	40.93	34.0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서울특별시 중구 예산현황)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75,633	266	41	225	0.05%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총계(A)	443,333	507,270	532,170	573,364	575,633
국외여비 총액 (B=C+D)	286	196	16	16	266
국외업무여비(C)	126	96	16	16	41
국제화여비(D)	160	100	0	0	225
비율	0.06	0.04	0.00	0.00	0.05

중구-유형평균 국외여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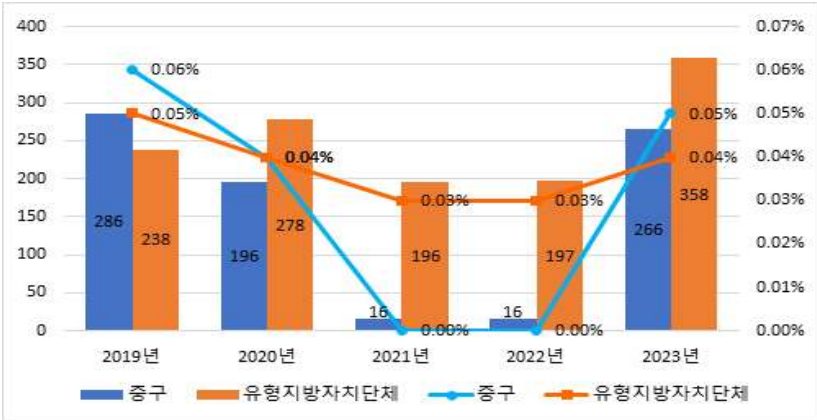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중구가 2023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25,100	2,446	0.4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3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액	393,624	453,547	482,852	523,789	525,100
행사·축제경비	1,864	3,451	3,780	3,286	2,446
비율	0.47	0.76	0.78	0.63	0.47

중구-유형평균 행사·축제경비 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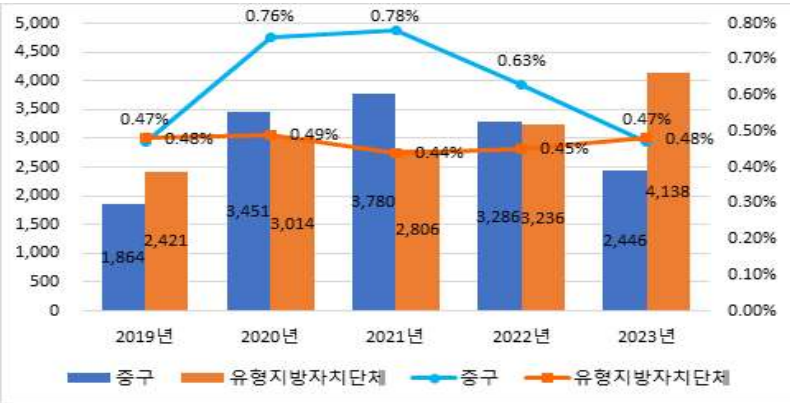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구의 2023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468	178	0	56	122	38.07%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34	134	189	195	178

중구-유형평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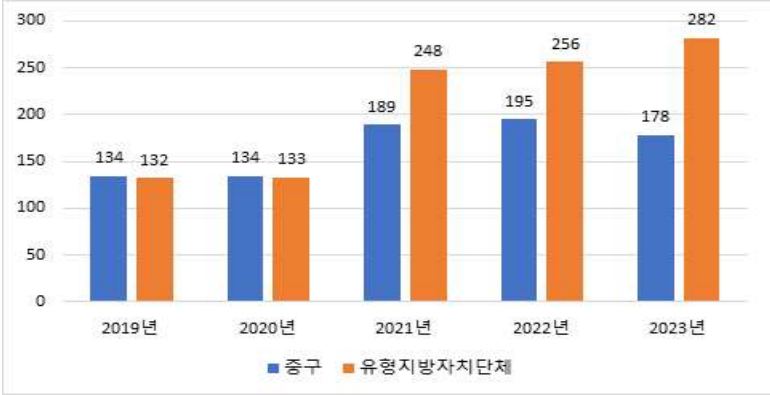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1,650	815	49.42

❖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969	856	804	811	815

중구-유형평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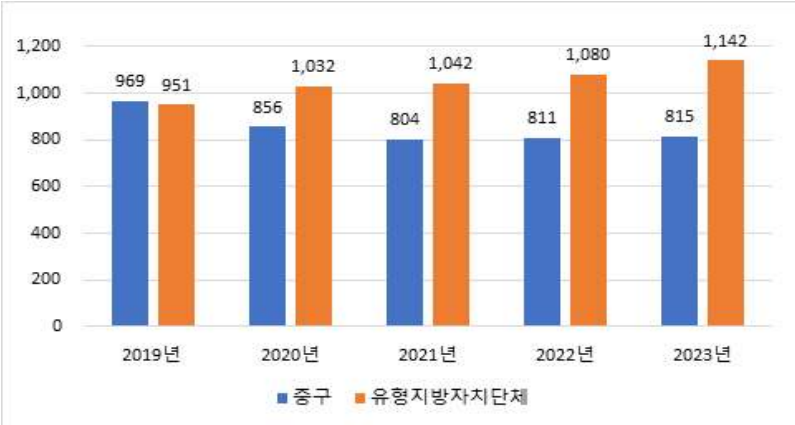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중구의 2023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246	218	63	116	32	7	88.59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17	217	229	224	218

중구-유형평균 지방의회 관련경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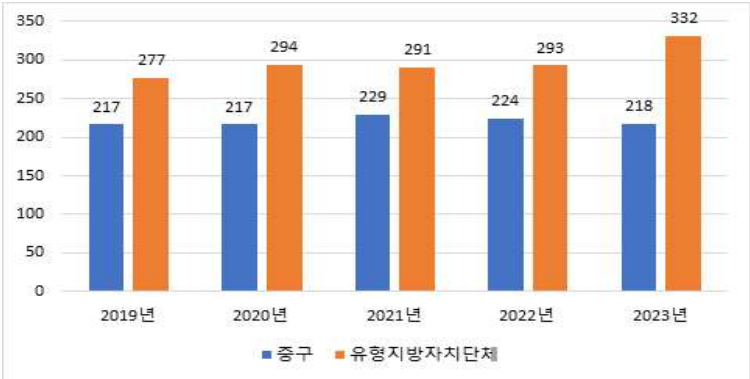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중구의 2023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5,312	4,775	4,292	483	80.80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4,881	6,469	4,163	4,268	4,775
한도 내	4,881	6,469	4,163	4,268	4,292
한도 외	0	0	0	0	483

중구-유형평균 지방보조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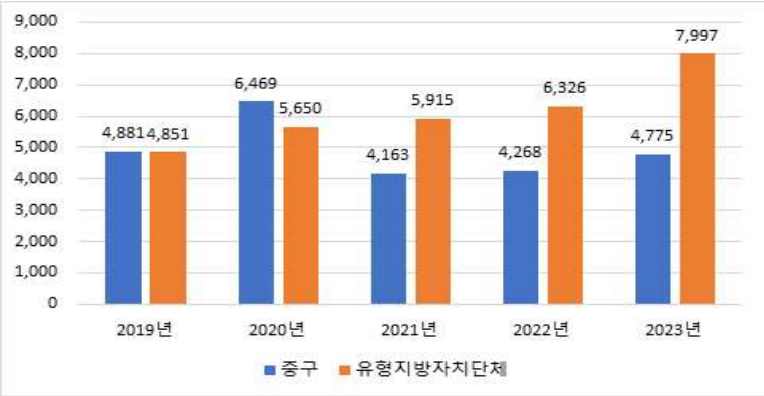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 중구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예산액 (A)	현금성 복지비 (B)	비율 (B/A)	비 고
575,633	118,986	20.67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728	3,707,264	2,145
공무원 일·숙직비	2,649	158,94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833	1,296,947	708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1인 2,145천원

통장 및 반장 활동 보상금

- 통장 : 기본수당 월 300천원, 상여금 연200%, 회의참석수당 20천원(월2회)
- 반장 : 연 50천원

5 재정운용성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23년 우리 중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23년에 우리 중구가 증액 교부받은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189호

공인(청인) 신조 등록 및 폐기 공인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신조 등록 및 폐기하는 공인을 동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인 등록 및 폐기 사유 : 통합인증기용 고무인 마모에 따른 교체

2. 사용개시일 및 폐기일 : 2023. 2. 28.

3. 등록 및 폐기 공인 내역

등록 공인

구 분	공 인 명	인영	규격(㎝) 및 서체	비 고
신 조	을지로동장인 통합민원전용(1) (종직인)	을지로 동장인 통합민원전용(1)	2.1 × 2.1 서울남산체EB	
신 조	을지로동장인 통합민원전용(2) (종직인)	을지로 동장인 통합민원전용(2)	2.1 × 2.1 서울남산체EB	

구 분	공 인 명	인영	규격(㎝) 및 서체	비 고
신 조	을지로동장인 통합민원전용(1) (횡직인)		2.1 × 2.1 서울남산체EB	
신 조	을지로동장인 통합민원전용(2) (횡직인)		2.1 × 2.1 서울남산체EB	
신 조	중구청장의인 을지로동주민센터 통합민원전용(1) (종직인)		2.4 × 2.4 서울남산체EB	
신 조	중구청장의인 을지로동주민센터 통합민원전용(2) (종직인)		2.4 × 2.4 서울남산체EB	
신 조	중구청장의인 을지로동주민센터 통합민원전용(1) (횡직인)		2.4 × 2.4 서울남산체EB	
신 조	중구청장의인 을지로동주민센터 통합민원전용(2) (횡직인)		2.4 × 2.4 서울남산체EB	

폐기 공인

구 분	공 인 명	인영	규격(㎝) 및 서체	비 고
폐 기	을지로동장인 통합민원전용(1) (종직인)		2.1 × 2.1 서울남산체EB	
폐 기	을지로동장인 통합민원전용(2) (종직인)		2.1 × 2.1 서울남산체EB	
폐 기	을지로동장인 통합민원전용(1) (횡직인)		2.1 × 2.1 서울남산체EB	
폐 기	을지로동장인 통합민원전용(2) (횡직인)		2.1 × 2.1 서울남산체EB	
폐 기	중구청장의인 을지로동주민센터 통합민원전용(1) (종직인)		2.4 × 2.4 서울남산체EB	
폐 기	중구청장의인 을지로동주민센터 통합민원전용(2) (종직인)		2.4 × 2.4 서울남산체EB	
폐 기	중구청장의인 을지로동주민센터 통합민원전용(1) (횡직인)		2.4 × 2.4 서울남산체EB	
폐 기	중구청장의인 을지로동주민센터 통합민원전용(2) (횡직인)		2.4 × 2.4 서울남산체EB	